2023년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Stand-up 맞춤 지원 사업 2분기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

(재)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Stand-up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, 해당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7월 17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○ **(추진근거)**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지역중소기업법) 제26조(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의 구축·운영)

○ **(사업목적)** 지역 중소기업 위기 선제대응 플랫폼 구축·운영을 통한 상시적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선제적 위기극복 지원체계 구축

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○ 해당 분기에 '주의'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위기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심층현장조사(위기진단) 참여기업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** 23년 2분기 해당 밀집지역 : (남구)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, (북구) 울산매곡일반산업단지, 울산매곡제2일반산업단지, 울산매곡제3일반산업단지, 울산중산2차일반산업단지, 울산아파트형공장, (울주군) KCC울산일반산업단지, 울산두동농공단지,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, 울산상북농공단지, 울산전읍일반산업단지,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

< 2023년 모니터링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>

중소기업 밀집지역 유형	관련 법령
벤처기업집적시설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신기술창업집적지역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단지	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지식산업센터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지역특화발전특구	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※ 울산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(붙임파일) 참조

3. 세부 지원내용

○ **(지원규모)** 총 1.6억원(국비 1.6억원)
- (컨설팅지원분야) 12개사, (기술 및 사업화지원분야) 17개사 내외

○ **(Stand-up 맞춤지원)** 총 3개 분야, 7개 항목
- 전문가(기술닥터) 또는 위기지원센터에서 진행한 **기업의 심층현장조사(위기진단)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** 제공
  - 컨설팅·기술·사업화 분야 중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 1개를 선택하여 맞춤 지원(지원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)
  - 맞춤지원 분야에 따라 최소 80만원 ~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(지원기간 최대 2개월)

< Stand-up "맞춤지원" 프로그램 >

구분	지원분야	지원항목	세부 지원내용	지원주체	지원금액
맞춤지원 (택 1)	컨설팅 지원	컨설팅	- 기업 애로사항 진단 기반 전략로드맵 수립 등 기업 맞춤형 현장 컨설팅 *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 ~ 최대 5회까지 지원 **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%(최대 2회)까지 인정(증빙자료 제출)	전문가	최소 80만원~ 최대 200만원
	기술 지원	시험 및 성능분석	-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/신뢰성 평가 등 지원	공급기관(업)	최대 800만원 (부가세 제외)
		특허출원/ 인증획득	-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, 디자인출원,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-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		
		기술정보 분석	- 기술동향 및 산업시장 환경 분석, 관련 인증 및 지식재산권 분석 등 지원		
	사업화 지원	마케팅 전략수립	-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,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	공급기관(업)	최대 800만원 (부가세 제외)
		디자인 개발	- 제품 품질·기능 향상을 위한 제품 디자인, 포장·로고(제품 브랜드 기획 포함)·그래픽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		
		마케팅 지원	- 제품 홍보물(제품 브로슈어, 제품 홍보 동영상, 제품 소개자료 등) 제작 지원		

* 기업지원비는 3자 협약을 통해 전문가(기술닥터) 또는 공급기업(관)에게 직접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4. 신청방법

○ 붙임파일의 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

5.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

구분	NO.	제출서류	비고	
공통 필수	1	신청서	붙임 1	신청 시 제출
	2	청렴이행각서	붙임 2	
	3	중복지원 금지 확약서	붙임 3	
	4	기업정보활용 동의서	붙임 4	
	5	사업자등록증		
	6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`20, `21, `22)	3개년	선정 시 제출
	7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협약일 이후	
	8	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포함)(`20, `21, `22)	3개년	
	9	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		

6. 평가방법 및 기준

○ **(평가방법)**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청·외부 전문가 등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

-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, 필요시 수행기관 매칭 후 사업비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조정

○ **(평가기준)**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(40점), 신청내용의 적절성(30점), 신청기업의 의지(20점), 신청예산의 적정성(10점)

7. 유의사항

○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
○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됨

○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며, 수혜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

8. 추진일정

○ **(접수기간)** 2023년 7월 17일(월) ~ 7월 28일(금) 18:00

○ **(지원절차)** 신청·접수 → 심층현장조사(위기진단)* → 선정평가위원회** → 수행기관(전문가 또는 공급기관·업 매칭) → 선정기업 협약 → Stand-up 맞춤지원

** 심층현장조사(위기진단)을 기진행한 기업은 생략

**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(예비진단)을 필수로 진행하며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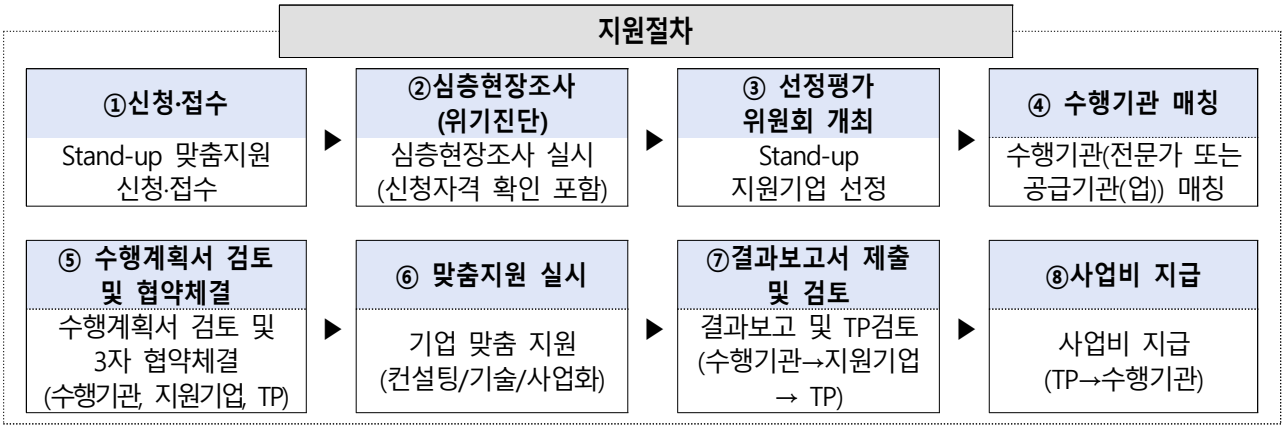
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 등 방법/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9. 지원 제외 대상

○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◈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기의 심층현장조사(위기진단)에 미참여한 기업

◈ 해당연도에 위기진단기업 긴급처방(Stand-up 맞춤지원) 2회 지원받은 기업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
◈ 기업의 휴·폐업

◈ 한국신용정보원의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
◈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경우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10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※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,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,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함

-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
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
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
-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-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○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

○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

○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

11. 관련 법령

○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.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-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
-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
-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-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-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
-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관리지침

12. 문의처

구분	담당자	이메일	전화
심층조사 (위기진단)	안상후 팀장	ash@utp.or.kr	052-219-8789
	차진희 연구원	jini@utp.or.kr	052-219-8547
Stand-up 맞춤지원	유홍구 팀장	neofill@utp.or.kr	052-219-8641
	안찬미 연구원	ahn@utp.or.kr	052-219-8587